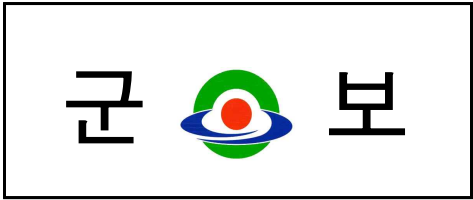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05호 2025. 4. 11.(금)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2025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46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2025년 양궁로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11.

예 천 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 및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①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구 간 현 황		
	도로명주소	상 가 명	
		기 점	종 점
2025년 양궁로 간판개선사업	충효로 238 ↔ 양궁로 56	신예천교	쌍용자동차
	충효로 293 ↔ 충효로 320	현대자동차	원당석재

- ② 적용범위는 해당구간에 위치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첨부된 **【별표1】** 위치도를 참조한다.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할 수 있다.(벽면이용간판으로 한정)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2.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②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 표시 상징물, 미용업소 싸인볼은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광고물이 업소를 특정 짓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로고, 엠블럼,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④ 건물 외벽의 노후 등 안전문제 발생 우려 시, 구조물을 이용하여 게시물을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⑤ 광고물등의 표시는 건축물, 각 업소의 성격, 주변 환경과 인접한 다른 광고물 등과 형태·크기·색상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①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 ② 벽면이용 간판은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을 적극 권장한다.
1. 상업지역 5층 이하(입체형), 기타지역 3층 이하(판류형, 입체형)
- 다만, 안전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벽면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경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③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고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의 80% 범위 내로 하며 1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의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1. 1층은 55cm 이내로 표시한다.

2. 1층 증가 시 5cm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70cm이하로 한다.

다만,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표시하는 입체형 간판의 세로 크기는 벽면 폭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간판의 돌출 폭은 30cm이내여야 한다.

⑤ 커튼월(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돌출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소형돌출간판은 각 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은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이 게시틀을 포함하여 9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하며, 의료기관·약국 표시 상징물(+, 약 등), 미용업소 싸인볼은 각 업소가 위치한 벽면에 각자 표시하여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게시틀을 포함하여 5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한다.

2. 높이는 간판의 최하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3미터 이상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표시가능 건물

1.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 봄) 및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으로 봄)에 있는 건물
- ② 표시가능 층수
 1. 예천군의 경우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건물의 층수는 건축허가(신고)대장상에 기록된 층수를 말함.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1. 자기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의 옥상구조물 벽면에 그 건물 이름이나 자기의 성명, 상호, 주소(인터넷 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의 옥상에 입체형으로 의료기관명 또는 상징도안을 표시하는 경우
- ④ 옥상간판은 허가 대상임에 따라 설치 전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 및 안전점검 합격을 득하여야 함.

제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 ② 띠 형식, 픽토그램, 글자를 이용해 간결하게 표시하며 건물과 조화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 ③ 도료,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단독 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업소가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1면의 면적은 10㎡ 이내 양면으로 표시 가능하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4m 미만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 면적의 총 합계면적은 40㎡ 이내여야 한다.

제10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전광류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 표시할 수 없다.
 -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조명의 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 ① 현수막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금지한다. 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다.

제12조(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지 등 기타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제13조(적용의 특례)

- ① 군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이 고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디자인된 광고물 등은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지정구역 내에 간판을 신규 설치(입점 및 사업주 변경 등)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 지원 사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 ③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1】

지정구역 위치도



구분	구간현황	비고
2025년 정비시범구역 지정구간	○ 충효로 238 ~ 양궁로 56 (신예천교 ~ 쌍용자동차) ○ 충효로 293 ~ 충효로 320 (현대자동차 ~ 원당석재)	